

07. 신호 · 지시위반사고에 대한 법규해설 및 관련판례

▣ 법률관계 및 성립요건

행위주체	차의 운전자
행위내용	신호기위반,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 위반, 통행의 금지나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지시에 위반한 경우
고 의	위반사실만 있으면 충분하고 이를 인식하였는지 등은 묻지 않음.
인과관계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충분하고,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항목	내용	예외사항
장소적 요건	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나. 경찰관, 헌병,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지역 다. 지시표지판(12가지)이 설치된 구역 내(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	가. 진행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나. 신호기의 고장이나 황색, 적색, 점멸신호등의 경우 다. 기타 지시표지판(12가지 표지판 제외)의 설치된 구역
피해자적 요건	신호 · 지시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리
운전자적 요건	가. 고의적 과실 나. 의도적 과실 다. 부주의에 의한 과실	가. 불가항력적 과실 나. 만부득이한 과실 다. 교통상 적절한 행위
시설물의 설치 요건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설치한 신호기나 안전표지	아파트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제외

▣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

차의 운전자가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된다. 또한, 보행자나 차마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신호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행위가 되어 범칙금이 통고된다.

▣ 각종신호의 종류

구분	내용
신호기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신호기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14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경찰공무원 등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포함), 교통순시원(시,도지시에 의해 임용되어 교통안전지도 업무를 하는 지방고용직 공무원), 경찰청으로부터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이 포함된다. (동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신호기·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동법 제5조 2항)
안전표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나 또는 선 등을 말한다.(동법 제2조 15호) 이러한 안전표지에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가 있다.

▣ 지시위반 적용 규제표지 종류

지시위반 적용 규제표지(12가지)				
				
201 통행금지	202 승용자동차 통행금지	203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204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205 2륜자동차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206 승용자동차 2륜자동차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207 트렉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	208 우마차 통행금지	209 손수레 통행금지	210 자전거 통행금지
				
211 진입금지	227 일시정지			

▣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에 관계없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통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통행금지와 일시정지 이외의 안전표지의 지시위반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사고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

또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 우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도교법 제5조) 범칙행위가 되어 경찰서장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된다.

신호위반으로 적용되는 사고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 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중 사고(점멸신호등은 제외)</li> <li>◦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li> <li>◦ 모든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호기가 좌회전신호일 때 좌회전해야 한다. 만약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신호 하에 진행중인 #2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li> <li>◦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li> </ul>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해야 하므로 직진신호 하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시에는 좌회전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단, #1, 2차량이 모두 신호위반일 때에는 양차량 공히 신호위반처리

◦ 경찰관, 모범운전자, 헌병의 수신호위반 사고

단,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서 수신호 중 발생한 사고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헌병이 아닌 일반군인의 수신호 중 사고는 수신호위반이 아니다.

◦ 통행금지구역, 진입금지구역, 일방통행구역에서의 사고

통행금지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이나,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진입금지 구역이나 일방통행표지판이 설치된 구역내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사고시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신호 · 지시위반사고 관련판례

판결요지	사건번호
교통신호에 의하여 정리되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해를 가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없으므로 과실이 없다.	대법원97다 47620판결
편도 3차선 도로 중 1, 2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 순경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의무전투경찰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98다 18339판결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手信號)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대법원98다 18339판결
의무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다.	대법원98다 18339판결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	대법원98도

<p>정이 없는 한 왕복 2차선의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p>	<p>1854판결</p>
<p>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p>	<p>대법원 95다 44153 판결</p>
<p>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p>	<p>대법원 93도 2562 판결</p>
<p>군부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흰색실선은 설치권한 있는 자의 설치가 아니므로 이를 침범한 사고시 지시위반 적용되지 않는다.</p>	<p>대법원91도 159 판결</p>
<p>차량신호기고장으로 녹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켜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신호기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측은 20%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p>	<p>서울고법 96.6.25 선고</p>
<p>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그 외의 경우인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 차량에 방해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대법원 96도 690판결</p>
<p>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p>	<p>대법원 95다 29369판결</p>

<p>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다.</p>	
<p>진행하던 방향의 1차선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에 따라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거나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 차마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할 방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노면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p>	<p>대법원 95도 3093 판결</p>
<p>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p>	<p>대법원 95도 3093 판결</p>
<p>차량신호기가 비록 교차로 입구로부터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에 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일 뿐 아니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라고 본다.</p>	<p>대법원 95도 1928 판결</p>
<p>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 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p>	<p>대법원 95도 1200 판결</p>
<p>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서행하면서 핸들조작 등을 통해 예방조치를 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데 이를 취하지 않았다면 30% 과실 인정된다.</p>	<p>대법원 94.6.21 선고</p>
<p>횡단보도의 양쪽 끝에 서로 마주보고 횡단보도의 통행인을 위한 보행자 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등 측면에 차선 진행방향을 향하여 중형 2색등 신호기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중형 2색등신호기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p>	<p>대법원 94도 1199 판결</p>

마에 대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차량은 반대도로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까지 염려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 없다.	대법원 92도 2579 판결
교차로에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고 따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1도 2330 판결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한 운전자가 신호위반한 차량을 충돌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신호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일부 과속이라도 사고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9도 1774 판결